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 5월 2일 제정되었으나,

재건축부담금의 적용 대상을 전국의 모든 지역으로 정함에 따라 지방의 경우 주택이 노후화되어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재건축부담금 등 다양한 개발이익환수 장치로 인하여 조합원의 원활한 동의를 구하기가 곤란하고, 사업성 또한 불투명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방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 중 2009년 6월 30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동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08년 6월 5일

국무총리 한승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 정종환
관

●법률 제9103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제52조에 따른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축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방화에 취약한 내부 마감재료로 인하여 1999년도 화성에서 발생한 씨랜드 화재사건 등과 같은 대규모 참사가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설계자 또는 공사감시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을 두어 내부 마감재료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정도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

2008년 6월 5일

국무총리 한승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법률 제9104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용산공원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 개편을 통하여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업무가 국무총리실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을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